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 고시

環境保全法이 改正되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飛散粉塵에 對한 구체적規制가 4월 1일부터 強化됐다.

환경보전법의 비산분진規制條項에 따라 環境庁은 「飛散粉塵發生源管理基準」을 告示,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飛散粉塵規制는 레미콘業種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參考資料로서 同管理基準을 全文 게재한다.〈編輯者 註〉

환경보전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7. 3.

환 경 청 장

환경보전법 관계조문

제26조의 2(비산분진의 규제) ① 분진중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분진(이하 "비산분진"이라 한다)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환경청장이정하는 지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산분진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분진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부 칙 —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분진을 발생시키는 배출시설 및 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에 대하여 비산분진을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그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산분진"이라함은 물체의 분쇄, 선별, 혼합 기타 기계적처리 또는 분체상 물질의 상적, 이송, 하화, 수송, 저장 기타 공사장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비산되는 분진을 말한다.
2. "비산분진 발생원"이라함은 비산분진을 발생시키는 배출시설 및 공사장의 비산분진 배출공정중,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장"이라함은 건축공사, 굴착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철거공사등을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곳으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것을 말한다.
4. "저장(시설)"이라함은 분체상의 원료, 부원료, 연료 및 제품등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거나 또는 구조물내에 적치한 것을 말한다.
5. "분체상물질"이라 함은 토사, 석탄, 시멘트 및 기타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6. "상적"이라함은 운반을 목적으로 분체상물질을 운반시설, 기계기구 및 기타 장치등에 이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하화"라함은 수송되어온 분체상물질을수송장비, 기계, 기구로부터 기계적 방법 또는 인력등을 이용하여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송"이라함은 분체상물질을 차량등의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9. "이송"이라함은 분체상 물질을 벨트콘베아, 바스케콘베아, 수불시설등을 이용하여 작업장내의 일정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0. "방진벽, 방진막 또는 방진덮개"라 함은 분체상물질의 저장, 이송, 상적 및 하화, 수송 또는 바람등 자연의 힘에 의해 발생되는 일정한 구조물의 개방부위(창문 또는 문등)를 통하여 분진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 막 또는 덮개를 말한다.
11. "사업자"라함은 비산분진 배출시설 및 공사장등 비산분진 발생원을 설치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은 비산분진 발생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비산분진 배출시설

구 분	배 출 시 설	규 모	대 상 시 설
1.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제	• 혼합시설 • 선별시설 • 분쇄시설 • 이송시설 • 저장시설	• 동력합계 30마력이상 • 동력합계 10마력이상 • 동력합계 20마력이상 • 벨트폭 30cm이상 또는 단위 바켙의 내용적이 0.01㎥이상 • 저장용량 100톤이상	• 레미콘제조시설 • 시멘트제조시설 • 석회제조시설 • 프라스터제조시설 • 기타 시멘트제품

품, 제조 및 가공시설	• 소성시설 및 용융시설(또는 건조시설, 반응시설, 냉각시설)	• 저장능력 300㎥이상 • 저장면적 100㎡이상 • 화격자면적 0.5㎡이상 • 발열량 10만Kcal/시간이상 • 전기사용량 250Kw이상 • 처리능력 0.5톤/시간이상	관련제조시설
2. 비금속 물질채취제조 및 가공시설	• 연소시설 • 산처리시설 • 선별시설, 혼합시설, 이송시설, 저장시설, 분쇄시설 절단시설	• 발열량 10만Kcal/시간이상 • 표면적합계 1.5㎡이상 •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시설규모와 동일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 도기 자기 및 도기 제조시설 • 내화용 점토제품 제조시설 • 석재채취 및 가공시설 • 활성탄제조시설 • 석탄제품제조시설 • 골재채취시설 • 기타 분체상 비금속광물을 취급하는 시설
3. 제1차 금속	• 용선로 • 주형 및 주물사 처리시설 • 탈사시설(숏트브라스트 포함) • 혼합시설, 선별시설, 이송시설, 저장시설, 분쇄시설 산처리시설	• 처리능력 0.2톤/시간 또는 1회 0.2톤 이상 • 발열량 10만Kcal/시간이상 • 전기사용량 250Kw이상 • 주물사 처리능력 1㎥/일 이상 또는 처리능력 1㎥/일 이상 • 동력 10마력이상, 분사능력 100kg/분 이상 •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시설 규모와 동일	• 주물시설 • 철강제품제조시설
4. 비료 및 사료제조시설	• 용해시설, 소성시설, 건조시설 • 합성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정	• 처리능력 50kg/시간 또는 1회 50kg 이상 • 화격자면적 0.5㎡이상 • 전기사용 용량 100Kw이상 • 발열량 10만Kcal/시간이상 • 처리능력 50kg/시간 또는 1회 50kg 이상	• 비료제조시설 • 사료제조시설 • 곡분제조시설

	제시설, 농축시설 분리시설, 혼합시설, 중화시설, 포화시설, 조립시설 냉각시설 • 분쇄시설, 선별시설, 저장시설	•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시설 규모와 동일	

2) 공사장

구 분	규 모	대 상 공 사
1. 건축공사	• 연건평 1,000㎡ 이상	• 건물, 지하상가, 기타 건축물
2. 굴착공사	• 총연장 200m 이상 • 굴착토사량 합계 1,000㎥ 이상	• 상·하수도, 가스, 전신전화 지하매설물, 기타 도로굴착
3.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 •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4. 조경공사	• 면적합계 1,000㎡ 이상 • 총연장 300m 이상	• 도로, 교량, 지하도, 지하철 지하구조물, 호안공사
5. 철거공사	• 연건평 1,000㎡ 이상	• 공원, 정원, 도로
6. 기타공사	• 1-5공사 이외의 공사로서 그 규모가 당해 각호의 공사규모 이상 또는 두가지 이상의 복합공사로서 그 규모의 합계가 당해 각호의 규모이상	

3) 비산분진 배출공정

가)저 장　나)상 적　다)하 화
라)수 송　마)이 송　바)선 별
사)혼 합　아)분 쇄　자)탈 사
차)제조장　카)작업장　타)공사장
파)채취장

제 4 조(시설관리기준) 1)제 3 조의 비산분진 발생원 설치자는 별표 1에 정한 시설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제 1 항의 시설관리기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할 사업가 타법의 규정이나 기술적인 문제등으로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대안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환경지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적용지역)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적용할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갑지역 : 가)환경보전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
나)서울특별시, 직할시
다)경기도의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의정부시, 부천시, 과천시, 구리시

2) 을지역 : 갑지역을 제외한 도청소재지 및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3) 병지역 : 갑지역 및 을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 6 조(사업자의 의무) 1)이 고시에서 정한 사업자는 별표 1"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비산분진 발생원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의 관리내용 또는 시설관리 기준의 준

수여부에 관한 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고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시설관리기준의 운영관리 점검을 위한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비산분진 발생원에 종사하는 자에게 비산분진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출입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의 세륜 세차 시행여부, 적재기준 적합여부등을 확인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신고) 비산분진 발생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 1 호의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작성 대상발생원을 설치하기 10일전에 관할 시, 도지사(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이와 같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1987. 4.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비산분진 발생원을 설치 운영중인 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조(시설관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기히 비산분진 발생원을 설치 운영중인 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고시의 시설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월 이내에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대안을 관할 시·도지사(환경지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배출공정	시 설 관 리 기 준	비 고
1. 저 장	1) 비산분진 발생원으로 분체상 물질을 저장하고자 할 때는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가) "갑"지역 (1) 저장시설;사이로, 상옥시설 또는 지하저장시설(밀폐용기저장) (2) 작업시설;저장물질의 상적, 하화, 이송을 위한 자동 또는 반자동시설 (3) 출입문;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은 자동 또는 반자동시설 (4) 집진시설;저장시설의 국소배기 부위등에 적합한 집진시설	• 광물저장 • 비금속광물저장 • 토석저장 • 골재저장 • 주물사저장 • 석탄류저장 • 곡분, 사료저장 • 비료 및 그 원료의 저장 • 기타 분체상물질의 저장
	나) "을"지역 (1) "갑"지역의 해당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2) 저장시설;저장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 (3) 작업시설;저장물질의 상적, 하화 또는 이송을 위한 중장비 확보	

배출공정	시 설 관 리 기 준	비 고
	(4)출입문;운반 및 정리작업을 위한 출입문은 개폐식으로 처리 (5)방지시설;저장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4 이상으로 방진막을 설치하거나 저장물질 표면에 표면경화제 살포 또는 덮개를 사용	
	다)"병"지역 (1)"갑""을"지역의 해당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2)저장시설;일정한 저장장소를 설정하고 저장물질이 작업장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1m 이상의 방진벽 또는 방진시설등(가마니 또는 마대등을 이용하여 쌓아 올림등)을 설치 (3)작업시설;저장물질 이송을 위한 중장비 또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운영 (4)출입문;저장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간이개폐식으로 설치 (5)방지시설;"을"지역의 방지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하거나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 라)저장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는 저장장으로부터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상적 및 하화	1)분체상물질을 상적 또는 하화할때는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갑"지역 (1)상옥시설 또는 지하저장시설 내에서만 상적 및 하화 (2)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을 제거할 집진시설	• 중장비에 의한 작업 • 차량에 의한 작업
	나)"을"지역 (1)상적 및 하화장소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10kg/㎠이상) (2)분체상물질의 함수율 7-10%로 유지 (3)상적 및 하화장소에 방진벽 또는 방진막을 설치	
	다)"병"지역 (1)"을"지역의 기준에 준하거나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진 조치를 강구	
3. 수송	1)분체상물질을 수송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 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배출공정	시 설 관 리 기 준	비 고
	가)"갑"지역 (1)수송중 적재물이 흘림 또는 비산되지 않는 유개 특장차에 의하여 수송 (2)무개차량일 경우는 적재함 상단의 5cm이하까지만 적재하고 흘림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덮어 운행(단, 덮개는 외관상 혐오감을 을 주지 않는 색상과 재질의 것을 사용) 나)"을"지역 및 "병"지역 "갑"지역의 기준에 준할것	
	2)분체상물질의 수송하는 도로에 관한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갑, 을지역 공통) 가)도로가 비포장 시설도로일 경우 (1)비산분진 발생원으로부터 비포장시설도로 연장이 1km미만일 때는 포장 (2)비포장도로 연장이 1km이상의 경우 비포장도로 반경 500m이내에 10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상을 포장 (3)비포장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분진이 주변 농작물 또는 산림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포장을 하거나 살수를 하여 분진의 비산방지 나)도로가 비포장 국도 또는 지방도로일 경우 (1)도로반경 5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 이상을 살수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	
	다)분체상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세륜 및 세차를 실시하여 수송차량으로 인한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갑"지역의 세륜시설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5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이상 • 수조수의 청정도 : 수조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청정수를 순환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배출공정	시 설 관 리 기 준	비 고
	• 탁도가 20도이상 오염된 수조수는 항시 교환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 • 수송차량은 수조 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 이상 왕복하여 바퀴등에 묻은 분진을 완전 제거한후 통과 (2) "갑"지역에는 자체의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살수(분사)높이는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이상 • 살수방법 : 양측에서 동시에 살수가 가능한 자동 또는 반자동 설비 • 수압 : 10kg/㎠이상일 것 • 3분이상 정차하여 자체나 바퀴등에 묻은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후 출발 • 측면살수시설에서 살수한 물은 세륜수조 또는 폐수처리장으로 자연유화방식으로 유입되도록 5도 이상의 경사를 둠 (3) "을"및 "병"지역은 위 (1) 및 (2)의 세륜시설과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4) 분체상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은 세륜 및 세차를 실시하지 않고는 운영하여서는 안됨.	
4. 이송	1) 이송시설을 옥외에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설 또는 조치를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갑"지역 (1) 이송시설의 상·하부와 입구, 출구를 완전 밀폐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 (2) 이송시설이 입구와 출구등을 밀폐한 경우에는 국소배기 부위에 집진시설을 설치 (3) 수불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	• 벨트콘베아 이송 • 바스켓콘베아이송 • 수불시설이송
	나) "을"및 "병"지역 (1) "갑"지역의 기준에 준하여 하거나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진 조치 강구	
5. 선별	1) 선별작업을 할때에는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설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회전체선별 • 진동체선별

배출공정	시 설 관 리 기 준	비 고
	가)"갑"지역 (1)선별작업을 상옥시설 또는 밀폐된 작업장내에서 실시 (2)작업장내의 국소배기 부위에는 집진시설을 설치	• 인력에 의한 선별
	나)"을"및 "병"지역 (1)"갑"지역의 기준에 준하거나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진 조치 강구 (2)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선별물질의 수분함량을 7-10%로 유지	
6. 혼합	"5. 선별"시설관리기준에 준함.	
7. 분쇄	"5. 선별"시설관리기준에 준함.	
8. 탈사시설	"5. 선별"시설관리기준에 준함.	
9. 제조장	1)제조장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분진은 제조장외로 비산배출되지 않도록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갑"지역 (1)제조장은 밀폐건물로 하거나 제조장 내부를 부압으로 유지 (2)제조장내의 국소배기부위에 집진시설을 설치 (3)제조장 바닥은 포장 (4)바닥에 분진이 퇴적되지 않도록 진공청소살수, 인력등에 의하여 1일 1회이상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살수한 물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상옥시설 또는 지하시설
	나)"을"및 "병"지역 (1)"갑"지역의 기준에 준하거나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진 조치 강구	
10. 작업장 및 채취장	1)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분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갑"지역 (1)작업장내는 포장 (2)우수, 살수한 물등이 폐수처리장 등으로 유입되도록 배수관망(또는 배수관거)을 설치하거나 또는 적절한 조치 강구 (3)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등을 덮거나 적정 방진시설 설치후 발파실시 (4)작업장은 살수시설(자동, 반자동, 수동살수시설로서 수압이 5kg/㎠이상)에 의한 정기적인 청소	• 제조장, 저장장 및 건축물등을 제외한 사업장내의 작업장소나 차량통행장소

배출공정	시 설 관 리 기 준	비 고
	를 실시하여 바닥에 분진의 퇴적을 방지 (5) 산업폐기물, 슬럿지, 폐슬래그등 분체상물이나 비산분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등에 저장 (6)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하여 청결유지	
	나) "을" 및 "병"지역 (1) "갑"지역의 기준에 준하거나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진 조치강구	
11. 공사장	1) 이 기준에서 정한 규모이상의 공사를 실시하는 공사장의 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갑"지역 (1) 공사장에는 출입차량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출입구에 다음과 같은 세륜 및 세차시설등을 설치할 것. ㉮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또는 공사장소가 노폭 20m 이상의 도로변으로부터 10m이내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 수송의 다)의 (1) 및 (2)에 정한기준에 따라 세륜 및 세차시설을 설치 ㉯ 세륜, 세차수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하수를 처리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처리수는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7 의 폐수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 설치장소부족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륜 및 세차시설,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환경지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2) 공사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세륜 및 세차를 실시 (3) 공사장에서 굴착, 철거, 절토, 매립등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등 분체상 물질은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장내에 적치하여서는 안됨.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장내에 적치하고자 할때에는 적치한 토사가 차도와 인도등 도로에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건축, 철거, 굴착공사등 공사중에 비산분진이	

배출공정	기 준 관 리 공 정	비 고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막, 방진벽 또는 방진덮개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적정개소에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살수실시 (5)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등은 차도와 인도등에 유수되거나 또는 살포하여서는 안됨. (6)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등 분체상물질의 상적과 하화시는 "2. 상적 및 하화"의 시설관리기준에 준하여 시행 (7)매립, 조경, 보도블럭 공사등을 완료한 후에 우수 또는 차량통행과 보행등에 의하여 토사가 도로나 보도에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8)도로신설공사 또는 공사장 출입을 위하여 비포장도로를 통행하여야할 경우에는 살수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비산분진 방지시설을 설치 (9)공사규모가 "(1)의 가)"보다적은 규모일 경우의 세륜세차시설 설치는 "3. 수송의 다)의 (1) 및 (2)"의 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을 설치 (10)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은 "3. 수송의 가)의 (1)"기준에 준함. (11)방진벽, 방진덮개 또는 기타 비산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장치, 기계, 기구등은 외관상 혐오감을 주지않는 색채나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등의 설치는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치	
	나)"을"지역 (1)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세륜세차를 위하여 "3. 수송의 다)의 (1) 및 (2)"의 기준에 준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을 설치 (2)세륜, 세차수, 살수한 물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하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간이시설을 설치 (3)기타 공사장내의 비산분진 방지를 위하여 "가)의 (2)－(11)"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간이 시설이나 조치 강구	

배출공정	기 준 관 리 공 정	비 고
	다)"병"지역 (1)"을"지역의 시설관리 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간이시설이나 조치 강구	

비산분진 발생원 설치 신고서(신설, 변경)

(1) 발생원명 :
(2) 소 재 지 :
(3) 사 업 자 :
(4) 전화번호 :
(5) 관 리 인 :
(6) 지역구분 :
(7) 설치시기 (공사기간) :

(7) 발 생 원			(8) 시설관리기준 (조치내용)			(9) 비 고
시 설 명	규격 (용량)	수 량	시설명 (조치내용)	규격 (용량)	수 량	

* 작성내용

(1) 비산분진 발생원의 공식명칭을 기재한다.
(2) 비산분진 발생원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기재한다.
(3) 비산분진 발생원을 설치 운영하는 법적책임자를 기재하고 현장관리자는 ( )에 기재한다.
(4) 소재지의 전화번호 기입
(5) 설치시기 (공사기간)는 설치운영시기를 기재하고 기존시설은 최초설치 시기를, 공사장의 경우는 공사기간을 기재한다.
(6) 지역구분란에는 갑, 을, 병 지역을 기재
(7) 발생원에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공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공사장의 경우는 공사종류 (건축, 토목, 조경공사등)에 따라 공사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8) 시설관리기준의 설치내역 또는 비산분진 방지를 위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계도면을 첨부한다.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10) 해당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한다.